



(天民思想)

정중호 | 계명대

1. 서론

기독교는 노비제도를 허용하는가? 당연히 아니라고 답한다. 동방기독교는 일찍부터 노비소유를 금지하였다.¹⁾ 그리고 그 흔적은 중국에서 발견된 경교유행중국비(景教流行中國碑)에서도 발견된다.²⁾ 또한 성경을 보면 사람을 차별없이 귀히 여기는 인류애 정신이 가득 차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당시의 일반적인 현상인 노비제도를 허용하고

1) 네스토리우스파는 585년 Isayahb I 대회에서 노예소유금지를 천명하였다. A. Toepel, "Christians in Korea at the end of the 13th century", in Dietmar W. Winkler, Li Tang (Eds.), *Hidden Treasures and Intercultural Encounters: Studies on East Syriac Christianity in China and Central Asia* (Wien: Lit, 2009), 286, 각주 35.

2) 不蓄臧獲 均貴賤於人(노비를 기르지 않는 것은, 인간의 귀천이 없이 균등함이라), Saeki, P. Y., *The Nestorian Documents and Relics in China* (Tokyo, The Murosen Co., 1951), 3.

있고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도 발견된다. 어떻게 상충되는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성경에 공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러한 이원적인 모습은 조선 초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조선에는 귀천지분론(貴賤之分論)을 바탕으로 노비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비를 ‘하늘이 낸 백성’이라 표현하는 천민사상(天民思想)도 있었다.³⁾ 성종은 사사로이 노비를 잔인하게 대하는 사건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천민사상(天民思想)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하늘에서 내신 백성은 본래 귀천이 없는 것이다. 비록 이름을 노비와 주인이라 부르는 하지만, 애초에는 다같이 천민(天民)인데, 지금 사람마다 자기의 노비라 하여 잔학을 마음대로 한다면 이는 천민(天民)을 해치는 것이니, 임금이 있고 법이 있다고 말하겠는가?⁴⁾

조선시대에 분명히 노비제도가 있었지만 천민사상(天民思想)을 강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 초기에 나타난 이원적 노비관을 분석하여 구약에도 나타나는 이원적인 노비관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하려는 것이다.

3) 「太宗實錄」에는 귀천지분론(貴賤之分論)과 천민사상(天民思想)이 함께 나타난다; “귀천(貴賤)의 분수는 하늘이 세우고 땅이 베풀어 놓은 것 같아서 어지럽힐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혹은 어지럽힌다면, 백성의 뜻이 정하여지지 않아서 능멸하고 참람한 풍기가 일어날 것입니다.”(「太宗實錄」 권5, 태종 3년 6월 을해). 그리고 태종 시대 형조판서 심온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늘이 민을 낼 적에 본래부터 양천(良賤)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일반의 천민(天民)을 사재(私財)로 여기고 조부의 노비라 칭하여 서로 다투며 송사함이 끝이 없고, 골육상잔하여 풍속을 손상하는데 이르니, 가슴 아픈 일이라 하겠습니다.”(「太宗實錄」 권 29, 태종 15년 1월 기미).

4) 「成宗實錄」 권217, 성종 19년 6월 경술 ‘天生蒸民, 本無貴賤. 雖名爲奴主, 初一天民也. 今若人人謂爲己奴僕而逞其殘虐, 則是害天民也. 其謂之有君有法乎?’

2. 구약의 이원적 노비관

아브라함도 노비를 두고 있었으며 사사시대, 왕정시대 등 구약의 모든 시대에 노비가 있었다. 구약의 배경인 고대 중동에는 모두 노비제도를 두고 있었는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이스라엘에도 역시 노비제도를 허용하고 있었다. 노비는 매매가 가능하였고 노비 신분이면 대대로 노비가 되는 신분제가 적용되고 있었다. 신분제가 정착되어 있는 모습은 잠언과 전도서에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잠 30:21-22; 전 10:5-7; 2:7).

그러나 구약에는 노비제도를 옹호하기보다 개선하려는 뚜렷한 움직임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것이 오경에 나타나는 노비해방법(출 21:2-11; 신 15:12-18; 레 25:39-46)이다. 그리고 구약에서 일관성 있게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비로 부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비록 경우에 따라 노비가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노비가 아니라 품꾼같이 여겨야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한다. 왜냐하면 노비로 억압을 당했던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노비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노비해방법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정해서 적용하도록 하였고 외국인 노비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외국인 노비의 경우는 전쟁 포로이거나 혹은 매매로 취득한 경우였다. 따라서 외국인 노비는 재산으로 간주되는 노비(chattel-slaves)였으며 노비해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부류였다.⁵⁾ 한편 이스라엘인으로 노비가 된 경우는 주로 빚을 갚지 못해 노비가 된 채무노비(debt-slaves)였으며

5) 레 25:44-45; Chirichigno, G. C., *Debt-slavery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140.

‘히브리 노비’로 부르기도 하였다.⁶⁾

3. 조선 초기 천민사상(天民思想)

노비제도의 바탕에는 귀천지분론(貴賤之分論)이 있었다. 귀천지분론의 기원을 찾아보면 「악기(樂記)와 「주역(周易)에서 찾아볼 수 있다.⁷⁾ 하늘과 땅의 이치를 그 기원으로 하고 있는 귀천지분론은 노비제를 포함한 신분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귀천지분론과 더불어 노비를 범죄자로 보는 전통이 또한 있었다.⁸⁾

민심을 수습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해야 하는 조선의 건국세력들은 천민사상(天民思想)을 표방하면서 노비의 숫자를 줄이고 양인의 숫자를 증대시키는 새로운 노비제도를 시행하였다.⁹⁾

그런데 천민사상의 ‘천민(天民)’이라는 용어는 시경(詩經)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늘이 못 백성을 낳으시니(天生烝民)”라고 하여 하늘이 인간 생명의 원천이며 세계 만민이 하늘이 낸 생명이라는 사상이 표현되어 있다.¹⁰⁾ 그리고 맹자의 글에서도 천민(天民)이라는 용어의 기원을 발견할 수 있다.¹¹⁾

-
- 6) 신명기법전에도 채무노비가 나타난다. 즉 「개역개정」 신명기 15:12에 ‘팔렸거든’으로 번역된 임마케르(יָמָאֵךְ)는 니팔 미완료형으로 재귀의 뜻이 있어 ‘스스로 팔았거든’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리고 ZB, LB, NV, REB 등의 번역도 재귀의 뜻으로 번역되어 있다. J. G. McConville, *Deuteronomy* (Leicester, Apollos, 2002), 262.
 - 7) 「樂記」, 第十九, 天尊地卑 君臣定矣 卑高已陳 貴賤位矣(하늘은 높고 땅은 낮아서 군신이 정해지고 높고 낮은 것이 벌여 서서 귀천이 자리잡고...), 「周易」繫辭上 第七, 天尊地卑 乾坤定矣 卑高以陳 貴賤位矣(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곤이 정해진 것이다. 낮고 높은 것이 펼쳐져 있으니 귀천이 자리 잡았다)
 - 8) 노비를 범죄자로 보는 견해의 기원은 고조선의 범금팔조(犯禁八條)와 부여의 법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漢書」志 卷28下, 地理志, 第8下; 「三國史記」 권제16, 故國川王 元年; 이인철, “한국 고대사회에서 노비와 노비노동의 역할,” 「한국고대사연구」 29(2003, 3), 154.
 - 9) 최이돈, “조선초기 천인천민론의 전개,” 「朝鮮時代史學報」 57 (2011), 15.
 - 10) 「詩經」 大雅, 湯之什, 烝民; 금장태, “유교의 천(天)·상제관(上帝觀),” 「사목」 통권 제151호 (1991), 69.
 - 11) 「孟子」, 萬章章句下 1장, 天之生斯民也 使先知 覺後知 使先覺 覺後覺 予 天民之先覺者也 予將以此道

이처럼 조선 초기에 천민사상이 제기되었는데 왜 이 시기에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이 나왔으며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려 말기의 심각한 폐단은 귀족들이 저마다 경쟁적으로 대토지를 소유하고 다수의 노비를 소유하면서 세력을 키우고 있었지만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점점 줄어들었고 균역을 감당할 양인의 숫자는 줄어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은 바닥이 나서 관료들에게 지급할 급료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당연히 왕실과 왕의 권한이 축소되고 약화되었다. 그리고 양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니 국방을 담당할 군대는 약화일로에 있었다. 뿐 만 아니라 귀족들의 착취로 인해 백성들의 원성도 높았다. 이러한 상황을 새로운 왕조가 방치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새롭게 집권한 조선의 건국 세력은 백성의 지지와 신홍사대부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이에 천민사상을 강조하면서 이 사상을 새로운 건국정신으로 활용하였다.

또한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私奴婢)는 대부분 채무노비였다. 즉 범법자도 아니고 포로도 아닌 것이다. 다만 가난하여 빚을 갚지 못해서 채무노비가 되었기에 국가는 채무노비를 억제하고 채무노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왔다. 동시에 사노비는 개인이 소유한 개인의 재산이었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국가라 하더라도 함부로 사노비를 동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노비가 천민(天民) 즉 국민이라면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비록 사노비가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이지만 ‘국민’이기에 국가에서 사노비를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¹²⁾ 따라서 천민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사상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통치권을 강화

覺此民也(하늘이 이 백성을 내신 것은 먼저 안 사람으로 하여금 뒤늦게 아는 사람을 깨우쳐주며, 먼저 깨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뒤늦게 깨닫는 사람을 깨우치게 하신 것이니, 나는 천민 중에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니 내 장차 이 도를 가지고 이 백성을 깨우치겠다).

12) 최이돈, 율글, 15-18, 27-31.

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는 사상이었다.

사노비가 천민(天民)으로서 국민이라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생긴다. 성종 17년 노사신은 “사천(私賤)이 모두 국민인데, 그 주인 되는 자가 생살(生殺)을 제멋대로 하여 자손에게 전하면서 사물(私物)로 생각 하니, 역대를 상고하여 보아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라고 노비가 국민으로서 생명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하였다.¹³⁾

세종은 주인이 노비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자 살해자인 주인을 벌하는 교지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

노비는 비록 천민(賤民)이나 하늘이 낸 백성 아님이 없으니, 신하된 자로서 하늘이 낳은 백성을 부리는 것만도 만족하다고 할 것인데, 그 어찌 제멋대로 형벌을 행하여 무고(無辜)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단 말인가!¹⁴⁾

그리고 노비가 국민이기에 국가가 시행하는 복지정책에서 노비를 제외시키지 않았다.¹⁵⁾ 세종은 천인(賤人)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인원인 시정(侍丁)을 배치하였는데 “...산 사람을 구휼하는 법전에 양인과 천인의 차이가 있어서 실로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천인을 복지정책에 포함시키라고 명하였다.¹⁶⁾ 또한 세종대왕은 노비가 임신하면 1개월간 복무를 면하게 해주고 출산휴가를 100일로 늘려주었다.¹⁷⁾ 그리고 남편에게도

13) 「成宗實錄」 권191, 성종 17년 5월 임신.

14) 「世宗實錄」 권105, 세종 26년 윤7월 신축. ‘況奴婢雖賤，莫非天民也？以人臣而役天民，亦云足矣，其可擅行刑罰而濫殺無辜乎？’ 세종의 교지도 유사하다. 각주 4번 참조. 「成宗實錄」 권217, 성종 19년 6월 경술.

15) 「世宗實錄」 권57, 세종 14년 9월 계유.

16) 「世宗實錄」 권72, 세종 18년 6월 신해.

17) 「世宗實錄」 권50, 세종 12년 10월 병술. “옛적에 관가의 노비에 대하여 아이를 낳을 때에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이후에 복무하게 하였다. 이것은 아이를 버려두고 복무하면 어린 아이가 해롭게 될까봐 염려한 것이다. 일찍 1백 일 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산기에 임박하여 복무하였다가 몸이 지치면 곧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만일 산기에 임하여 1개월 간의 복무를 면제하여 주면 어떻겠는가. 가령 그가 속인다 할지라도 1개월까지야 넘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상정소(詳定所)에 명하여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1개월간 출산휴가를 주었다.¹⁸⁾

그리고 예치국가(禮治國家)의 기치를 세우고 정치를 펼친 조선은 법보다 앞서서 예를 숭상하였다. 그리고 노비도 국민이기에 예를 숭상하는데 제외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노비인 천인(賤人)이 효자로 선발된 경우가 있었다. 태조 때에 관노(官奴)인 물금이 효자로 선발되었고 이를 기념하는 정려(旌閭)를 세워 공동체의 귀감으로 삼았다.¹⁹⁾

임금이 양로연을 베풀 때 천인(賤人)도 참여를 허락하였고, 왕비가 베푸는 양로연에도 역시 천인이 참석하였다.²⁰⁾ 세종 26년에는 80세 이상의 천인(賤人)에게 ‘천인을 면하게’하는 면천(免賤)의 조치를 취하고 관직을 부여하여 노인을 우대하였다.²¹⁾ 이러한 것은 파격적인 것으로 고려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

조선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비를 해방시켜 양인으로 만드는 일도 시행하였다. 국가에서 인원을 동원하거나 군인으로 공을 세운 노비를 해방시킨 사례가 있었다. 변방인 함길도에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였는데 노비에게는 양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있었다.²²⁾ 그리고 군인으로 동원되어 공을 세운 노비를 보충군으로 편입시켰는데 보충군은 양인의 신분이라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노비를 해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이렇게 사노비를 해방시킬 때는 국가에서 사노비 주인에게

하라.”

18) 『世宗實錄』 권64, 세종 16년 04월 계유 “경외의 여종[婢子]이 아이를 배어 산삭(産朔)에 임한 자와 산후(産後) 1백 일 안에 있는 자는 사역(使役)을 시키지 말라 함은 일찍이 법으로 세웠으나, 그 남편에게는 전연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전대로 구실을 하게 하여 산모를 구호할 수 없게 되니, 한갓 부부(夫婦)가 서로 구원(救援)하는 뜻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이 때문에 혹 목숨을 잃는 일까지 있어 진실로 가엾다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역인(使役人)의 아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남편도 만 30일 뒤에 구실을 하게 하라.”

19) 『太祖實錄』 권8, 태조 4년 9월 정미.

20) 『世宗實錄』 권61, 세종 15년 윤8월 계축; 세종실록 권57, 세종 14년 8월 갑인.

21) 『世宗實錄』 권68, 세종 17년 6월 신유.

22) 『世宗實錄』 권96, 세종 24년 5월 임신.

23) 『世宗實錄』 권79, 세종 19년 10월 경진. 최이돈, 윗글, 31.

일정액으로 보상을 하였다.²⁴⁾

또한 천민사상(天民思想)은 왕권의 합법성과 존귀함을 강화시켜주는 사상이기도 하였다. 조선의 통치체제를 세운 정도전은 「조선경국전」을 작성하면서 천민(天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²⁵⁾ 세종대왕도 천인(賤人)을 차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왕의 임무가 하늘을 대신하는 임무임을 강조하였다.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人君之職 代天理物). 만물이 그 처소를 얻지 못하여도 오히려 대단히 상심할 것인데 하물며 사람이 있어서라. 진실로 차별없이 만물을 다스려야 할 임금이 어찌 양민(良民)과 천민(賤民)을 구별해서 다스릴 수 있겠는가?²⁶⁾

4. 천민사상(天民思想)과 구약의 노비관

조선의 노비관과 같이 구약에도 신분제도를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노비제도를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 한정해서 노비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원적인 논리를 표명하고 있다. 구약에서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과 외국인을 구분한 점이다.

1) 천민사상(天民思想)과 하나님의 백성

‘하늘이 낸 백성’이란 뜻의 ‘천민사상(天民思想)’에는 분명히 평등사상

24) 「世宗實錄」 권95, 세종 24년 2월 기해.

25) 「朝鮮經國典」 治典, 官制; “인군은 천공(天工)을 대신하여 천민(天民)을 다스리니...”

26) 「世宗實錄」 권37, 세종 9년 8월 갑신. ‘人君之職, 代天理物, 物不得其所, 尚且痛心, 況人乎? 以人君治之, 固當一視, 豈以良賤, 而有異也?’ 정운재, “세종대왕의 ‘천민/대천이물’ 론과 ‘보살핌’ 의 정치,” 「동양정치사상사」 제8권 1호 (2009), 148.

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평등사상은 창조신학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창조신학은 인류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임을 고백한 것이며, 인류 모두가 한 가족으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고 노아의 자손임을 선언한 것이다.

‘천민(天民)’과 또 다른 유사한 의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용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라 부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예의 땅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 자유의 백성으로 만들어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하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물인 이스라엘 백성을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비로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노비를 ‘나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라 부르는데(레 25:42), 이 용어는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설명이 뒤따라 나온다(레 25:46). 혹여나 빚을 갚지 못해 노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히브리 노비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에서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2) 채무노비 해방과 생활대책

천민사상(天民思想)을 내세운 조선 초기 태조 이성계는 채무로 인해 양인을 노비로 만드는 것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리고 만일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무의 액수만큼만 채권자에게 가서 일하게 한 후 방면하도록 하였다.²⁷⁾ 즉 노비가 아니라 품꾼으로 일하도록 한 것이며 「태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섯째는, ‘부채 노비(負債奴婢)를 금지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도평의사사에서 의논이 적당하다고 여깁니다. 우리 조정에서는 양민(良民)과 천민(賤民)의 법이 매우 엄격한데, 양민(良民) 가운데 부채를 갚지 못한 사람을 영구히 노비

27) 지승중,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일조각, 1995), 146.

로 삼으니 매우 이치에 맞지 아니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채를 갚지 못하면 제공한 전곡(錢穀)의 수량을 노비(奴婢) 역가(役價)의 수량과 비교하여 부채(負債)의 수량을 다 갚은 사람은 방면(放免)하게 하고, 한 본전에 한 이자로 하여 함부로 역사(役事)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일정한 규정으로 삼고, 어긴 사람이 있으면 양민을 압박하여 천민으로 삼는 죄로 논죄(論罪)하게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그 음사(淫祀)의 금지는 예조에 내리어 상세히 상정(詳定)하여 보고하도록 하라.”²⁸⁾

「태조실록」의 내용을 설명한다면, 채무는 일을 하여 갚도록 하였는데 모두 갚은 사람은 해방시키도록 하였다. 품삯은 노비가 일하는 역가인 하루에 포삼십척(布三十尺)이었다.²⁹⁾ 그리고 채무에 대해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지 말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불법으로 억압하여 양민을 노비로 만들었다는 범죄로 다스리겠다는 것이다.

채무노비 금지와 더불어 시행한 것은 토지개혁이었다. 즉 과전제(科田制)를 실시해서 농민에게 토지를 재분배하면서 노비를 해방시킨 것이다.³⁰⁾ 채무노비의 문제가 경제적인 것이었기에 가장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는 토지를 재분배하면서 노비를 해방시켜 실질적인 효과를 얻도록 하였다.

구약의 노비해방방법에 나타난 내용도 채무노비 해방이라는 면에서는 비슷하다. ‘히브리 노비’로 부르기도 하는 이스라엘인 노비는 주로 빚을 갚지 못해 노비가 된 채무노비(debt-slaves)였으며 안식년(출 21:2-

28) 「太祖實錄」 2, 태조 원년 11월 갑오조, ‘五曰, 禁負債藏獲. 使司議得, 本朝良賤之法甚嚴, 以良人負債未償者, 永爲藏獲, 甚爲非理. 自今負債未償, 以其所供錢穀之數, 比奴婢役價之數, 債數盡者免放, 一本一利, 毋得濫役, 以爲恒規, 如有違者, 以壓良爲賤論.’ 上曰: ‘其淫祀之禁, 下禮曹, 備細詳定申聞.’

29) 「高麗史」 39, 형법조, 노비조, 이 역가는 고려 성종 5년(986년)에 정해진 것이었다.

30) 이경식, 「한국중세토지제도사-조선전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10.

11), 면제년(신 15:12-18), 희년(레 25:39-46) 등의 경우에 해방될 수 있었다.³¹⁾

채무노비가 되는 근본 원인은 생활비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 먹을 것이 없으니 곡식을 빌릴 수 밖에 없고 빌린 빚을 갚지 못하니 노비로 팔려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주전 8세기 때 세력가들이 토지를 확대하여 대농장을 형성하면서 가난한 농민들이 땅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땅을 잃어버린 농민은 결국 채무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미 2:2; 사 5:8).³²⁾

잠언에서도 채무노비가 있음을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잠 22:7). 채무노비는 주로 과중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혹은 재해나 기근 때문에 발생하였다.

노비해방법인 계약법전(출 21:2-11)과 신명기법전(신 15:12-18), 그리고 성결법전(레 25:39-46) 등 모든 법전은 당시의 제도에 의하여 이스라엘인이 채무노비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품꾼으로 대하도록 하였다.³³⁾ 계약법전에서는 6년 동안 노비로 일했으면 7년째는 해방시키도록 하였는데 생활대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신명기법전에는 7년째 해방을 시키면서 양식과 양떼를 주도록 되어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성결법전에는 근본적인 생활대책인 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노비해방법 가운데 계약법전과 신명기법전의 경우 이스라엘 노비 가운데 자원해서 종신 노비가 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왜 이러한 길을 열어두고 있는가?

31) J. Milgrom, *Leviticus 23-27* (New York: Doubleday, 2001), 2214.

32) R. Coote, 우택주 역, 「아모스서의 형성과 신학」(대한기독교서회, 2004).

33) R. Klein, “A Liberated Lifestyle: Slaves and Servants in Biblical Perspective”,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9 no. 4 (1982, 8), 213-214 212-221.

계약법전의 경우 남종은 해방되는데 만일 결혼해서 종이 되었으면 함께 해방된다. 그러나 만일 주인의 노비와 결혼했으면 결혼한 여종도 그리고 그 자녀도 주인의 소유이기에 함께 해방되지 않는다. 만일 가족인 여종과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으면 주인집에 종신토록 있어야 한다(출 21:4-6). 이 경우는 노비 주인의 재산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생활대책이 없는 노비해방의 경우 해방된 노비의 경제적 상황이 취약한 점이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신명기법전의 경우 남녀노비 모두 해방될 수 있고 해방될 때는 곡식과 양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까지 받을 수 있었다(신 15:12-14). 부분적이지만 긴급한 생활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만일 노비가 주인과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영영히 노비가 되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신 15:16-17). 이러한 조치는 노비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다. 비록 물품을 받고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경제적인 독립이 어려울 때 주인과 함께 살 수 있을 길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결법전의 경우에는 영영히 노비가 되는 길을 열어놓지 않았다. 근본적인 생활대책인 토지가 확보되기 때문에 아무도 영영히 노비를 택하는 경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노비 해방이라는 것이 단순히 인권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오히려 경제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는 점이다.³⁴⁾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노비 해방이라는 것은 헛구호에 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생활기반이 되는 토지가 확보되는 성결법전의 희년제도가 말로 실질적인 노비해방방법으로 간주할

34)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노비 문제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Zipporah G. Glass, "Land, slave labor and Law: Engaging ancient Israel's economy," *JOT* 91 (2000), 27-39; 정중호, "구약의 노비 해방법과 조선 후기 노비 현상," 「구약논단」 제18권 1호 (2012), 154-177.

수 있는 것이다.

노비해방법을 볼 때 가능한 한 이스라엘 백성을 노비로 만들지 말아야 하며 노비가 되었다 하더라도 품꾼같이 지낼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을 채운 후에는 해방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다. 왜 이런 또 다른 이원적인 노비관이 나타나는 것일까?

성결법전의 노비해방법은 잃어버린 토지를 되찾는 것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레 25:23-28). 그러나 외국인은 처음부터 토지를 분배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명기법전은 노비해방법의 근거를 출애굽 사건에서 찾았다(신 15:15). 그런데 외국인은 출애굽한 백성이 아니기에 제외시킨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계약법전은 ‘히브리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 해방 대상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시켰다(출 21:2). 외국인을 노비 해방법에서 제외시킨 것은 현실과 이상을 조화시키려는 타협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고대 사회에서 노비가 필요했고 또한 노비제도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신학적으로 동족을 노비로 방치할 수는 없는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원적인 노비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것은 외국인 노비의 취약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 위치로 볼 때 동족과 외국인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 결국 외국인 노비란 가장 취약하고 가난한 계층이었다. 이들이 일용노동 외의 다른 길이 없는 상태에서 노비로 계속 머문다는 것은 생활이 보장되는 효과도 있었다. 적어도 굶지는 않고 거주할 곳이 제공되며 신변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노비 해방법에 포함되어 외국인 노비가 해방된다 하더라도 생활기반인 토지도 없고 재산도 없는 상태이기에 쉽게 다시 노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현실이었다.

조선 시대 노비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을 찾아보면 조세와 부역 그리고 균역을 감당하기 힘들어 스스로 자원해서 세력가들의 노비로 가는 양인

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³⁵⁾ 소위 노비 투탁(投託)현상이다. 즉 경제적 이유로 인해 양인이 노비 처지를 부러워하게 될 때 노비 해방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노비해방은 생활대책이라는 경제적 대책과 병행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명분만 해방이지 사실은 굶주리고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추방하는 방편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결코 노비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강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무엇이 그나마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분명한 것은 구약의 노비해방법이 신분의 자유를 주면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희년제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생활기반이 되는 토지가 확보됨으로서 실질적인 노비해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노비제도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노비 못지않게 속박당하고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볼 때 오늘날에도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는 진정한 ‘해방’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3) 노비 보호 및 복지 혜택

조선에는 천민사상(天民思想)에 근거하여 상전이 노비를 죽였을 때는 반드시 그 죄를 묻게 되어 있었다. 즉 노비의 생명을 법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구약에도 노비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였고, 노비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노비 주인이 보상을 해주거나 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노비 주인이 노비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거나 이를 쳐서 빠뜨리게 했다면 그 보상으로 주인은 노비를 방면시켜야 한다(출 21:26-27). 이러한 규정은 노비 주인이 함부로 취약한 노비를 상해할 수 없도록 노비를 보호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35) 지승중, “朝鮮前期의 投託과 壓良爲賤,” 『사회와역사』 제8권 (1987.12), 17-19.

또한 계약법전에 의하면 매로 노비를 쳐서 죽였을 때 노비의 주인이 형벌을 받아야 한다(출 21:20). 그러나 「개역개정」 번역에 의하면 노비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노비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는 출애굽기 21장 12절의 내용과는 과연 다른 것일까? 노비에게 적용되는 살인의 규정과 양민의 살인에 관한 규정은 다른 것일까? 이러한 현상은 고대 중동의 문헌에 나타나는데 일반 백성에 대한 규정과 노비에 대한 규정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³⁶⁾ 그러나 이빨을 쳐서 빠뜨리게 해도 노비를 방면해야한다는 규정을 참조할 때(출 21:26-27), 그리고 일반백성에 관한 것과 노비에 관한 것을 같은 규정 안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차별을 둔다고 볼 수는 없다. 과연 주인은 이틀 후에 죽을 정도로 노비에게 심한 매질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21장 20-21절 부분을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계약법전은 특이하게 노비법부터 시작된다. 고대중동의 법전에는 노비에 관한 항목은 나중에 편재되어 있는데 비해 이스라엘의 법전에는 노비법부터 시작되는 것이 독특하다. 계약법전의 노비법 가운데 출애굽기 21장 20-21절은 해석상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특히 “그(노비)는 상전의 재산임이라”(21절)는 구절이 과연 노비를 위한 것이냐 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21절에 노비가 죽을 만큼 매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주인이 형벌을 면한다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처사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우선 20절은 노비 주인이 노비를 살해했을 경우다. 그런데 이러한 죄에 대한 형벌이 특이하다. נָפַקְוּ נָפַקְוּ(나콰 이나콰)을 「개역개정」에서는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반드시 복수를 당할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나콰는 법

36) B. S. Childs, *The Book of Exodus*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471.

정에 의해 형벌이 실시되는 형태가 아니라 살해당한 가족이 피의 복수자(עֹרֵב לַדָּם[고엘 하담])가 되어 살해자를 추적하여 복수하는 형태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형벌을 가하는 경우에 사용되기 때문이다.³⁷⁾ 이 경우 살해자인 노비주인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법정에서 법적으로 선고할 때는 사형을 מוֹת יוֹמָת(모트 유마트 [출 21:12,17])로 표현하는 반면 하나님 혹은 피의 복수자에 의한 형벌은 ‘나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³⁸⁾

왜 ‘무트’를 사용하지 않고 ‘나캅’을 사용했느냐? 이스라엘 노비의 경우에는 살해되었을 경우 가족이나 친족들이 피의 복수자가 되어 살해자를 처단할 수 있거나 혹은 법정에서 고소해서 형벌을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2절처럼 ‘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외국인 노비의 경우에는 살해된 노비를 위해서 행동할 대리자가 없기 때문에 살인죄가 덮여버릴 수 있다.³⁹⁾ 살인죄가 덮여 버리면 결국 공동체 전체가 살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⁴⁰⁾ 따라서 공동체 혹은 하나님에 의해 정의로운 심판을 행해져야 하기 때문에 ‘나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결국 20절은 피의 복수자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외국인 노비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라 볼 수 있다

21절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נִצְּוָה(야아모드)에 대한 해석이다. 「개역개정」을 비롯하여 많은 번역들이 ‘생존하다(survive)’라는 뜻으로 야아모드를 번역했다.⁴¹⁾ 이러한 번역은 「70인역」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70인역」에서는 ‘생존하다’라는 뜻으로 디아비오세(διαβίωση)라고 번역되어

37) G. C. Chirichigno, 윗글, 165.

38) G. C. Chirichigno, 윗글, 166-167.

39) G. E. Mendenhall, *The Tenth Generation: The Origins of the Biblical Tradition*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90-91.

40) 공동체 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경우 공동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범인을 알 수 없는 의문의 피살자가 일어난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마을공동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신 21:1-9). 고대 중동에서는 통치자가 책임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공동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점이 특이하다. F. C. Fensham, "Widow, Orphan and the Poor in Ancient Near Eastern Legal and Wisdom Literature", *JNES* 21 (1962), 135.

41) 「개역개정」, *NRSV, NUB*.

있다. 이렇게 해석해서 번역하면 「개역개정」처럼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1-2일 후에 죽는다 하더라도 사람을 죽인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그런데도 형벌을 면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따라서 עמך(아마드)를 어떻게 번역해야할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아마드’를 ‘생존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 예가 없다.⁴²⁾ 만일 ‘생존하다’라고 표현하려면 הָיָה(하야)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야 한다. ‘아마드’의 기본 뜻은 서다(stand)이다. 따라서 ‘하루 이틀 만에 일어서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합하다.⁴³⁾ 비록 노비가 주인으로부터 매를 맞았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 만에 일어난다면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은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양민의 경우(출 21:18-19)와 차이가 없는 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노비는 그의 재산이다’라는 구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차일즈(B. S. Childs)는 주인이 재산상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인을 문책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하였다.⁴⁴⁾ 혹은 고의적 살해나 혹은 비고의적 살해나를 구분하기 위해 후대에 첨가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비고의적 살해라 하더라도 형벌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구절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런데 치르시노(G. C. Chirichigno)는 노비의 소유주인 주인이 상처받은 노비를 치료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으로 보았다.⁴⁵⁾ 매질을 당한 노비는 비록 일어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다(출 21:19 참조). 따라서 이 구

42) G. C. Chirichigno, *Debt-slavery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173.

43) 이러한 번역에 동조하는 학자들과 번역본은 다음과 같다; G. H. Davis, *Exodus* (TBC; London: SCM Press, 1967), 177-178; D. Patrick, *Old Testament Law* (London: SCM Press, 1985), 76; D. Daube는 18-19절과 20-21절이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D. Daube, “Direct and Indirect Causation in Biblical Law”, *VT* 11(1961), 248.

44) B. S. Childs, *윗글*, 471.

45) G. C. Chirichigno, *윗글*, 176.

절은 다른 사람이 아닌 노비의 소유주이며 가해자인 주인이 노비를 치료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구절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론도 양민의 경우인 19절과 유사함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

21절의 경우에도 외국인 노비와 이스라엘 노비를 구별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노비라면 누구나 이러한 보호와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뜻의 규정이다. 특히 바로 앞에서 양민의 상해의 경우 치료와 배상이 따른다는 규정과 20-21절의 노비에 관한 규정이 별반 차이가 없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노비법은 고대 중동의 노비법보다 노비의 안전과 보호에 더 관심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처우는 26-27절에 분명히 나타난다. 즉 노비의 눈이나 이빨을 상하게 했으면 치료할 수 없는 영구적인 상처를 입힌 것이기에 노비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물론 여기서도 외국인 노비와 이스라엘 노비 사이의 차별은 없다.

노비를 보호하는 또 다른 모습은 노비추쇄(奴婢推刷)를 금지시키는 조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노비는 재산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친 노비를 붙잡아 오는 노비추쇄(奴婢推刷) 관행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조선시대에 노비추쇄 관행이 있었으나 조선시대 후기 정조는 도망한 노비의 처벌법인 노비추쇄법(奴婢推刷法)을 폐지하였다.⁴⁶⁾ 구약에도 이러한 두 가지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솔로몬 왕 때 시므이가 블레셋으로 도망친 노비를 다시 붙잡아 오는 사건이 있었다(왕상 2:39-40). 시므이는 사실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노비를 붙잡아 오기 위해 블레셋 가드까지 갔다는 것은 노비추쇄에 대한 의지가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명기 법전에는 도망 온 노비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지 말라고 되어 있다(신 23:15-16).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46) 「正祖實錄」 권20, 정조 9년, 7월 기유; 전형택, “조선후기 사노비의 추쇄,” 「전남사학」 6집(1992), 62-69.

땅이기에 일종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망친 노비가 다시 붙잡혀 원주인에게 갔을 때는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노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 볼 수 있다.

조선에는 천민사상을 바탕으로 노비에게도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왕명으로 강조하였다. 비록 노비주인인 사대부들은 왕명 이기에 거역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광범위하게 실시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그러나 적어도 왕실에서는 노비도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구약의 경우, 노비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한다면 일반 백성이 향유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노비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노비인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권리를 대부분 행사할 수 있었다. 제사에도 참여하고 절기에도 참여하며 토라에 나타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복지혜택의 경우 이스라엘에서는 히브리 노비와 외국인 노비를 크게 구별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우선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고 휴식할 경우 노비도 함께 휴식해야 한다(출 20:10; 신 5:14). 사실 노동의 경우, 안식일 규정에 의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노비들이었으며 이 경우에도 히브리 노비와 외국인 노비 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사장의 노비의 경우,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양민들은 먹을 수 없는 거룩한 음식을 제사장 노비는 먹을 수 있었다(레 22:11).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면 제사장 노비는 굶주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히브리 노비와 외국인 노비 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외국인 노비라 하더라도 제의에 참여하는 방안이 있었는데 할례를 받고 제의에 참여하였다(출 12:44, 48). 즉 할례의식을 통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후에야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노비와 외국인 노비를 불문하고 노비를 보호하는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노비에게 복지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고 제의에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4) 왕권강화

‘하나님의 백성’ 사상이 포함된 노비해방법이 ‘천민사상’과 마찬가지로 노비를 소유하는 세력가들에 대한 왕권을 강화시키는 효과는 없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부로 노비로 만들 수 없고 노비가 되었어도 품꾼처럼 대해야 한다고 하면 철저한 신분제가 아닌 평등한 한 민족의 개념이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노비 주인의 소유 개념이 약화되며 노비 주인의 권한이 축소된다. 일반 백성들도 노비를 소유할 수 있지만 노비를 많이 소유하는 사람들은 대지주이거나 세력가들이다. 노비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력가들이 노비를 마음대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으며 적어도 품꾼의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의 위상은 어떻게 될까? 시온신학에 의하면 왕은 하나님에 의해 임명되고 기름부음 받은 거룩한 신분이며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인물이다. 마치 조선에서 “임금의 직책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다 (人君之職 代天理物)”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⁴⁷⁾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린다면 이스라엘 왕은 노비도 통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즉 세력가들이 아무리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왕명에 의해 노비를 동원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사상은 ‘천민사상’과 마찬가지로 왕권을 강화시켜 주고 세력가들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47) 「世宗實錄」 권37, 세종 9년 8월 갑신.

시드기야 왕의 경우 왕이 노비를 해방시키는 일을 주도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백성’ 사상이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왕권을 강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⁴⁸⁾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내용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렘 34:9)는 것이다.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사람들과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거친 후 노비를 해방시킬 수 있었다. 사실 조선에서도 왕이 노비를 동원할 수는 있었지만 노비를 면천시켜 해방시킬 때는 왕이 노비 주인에게 보상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⁴⁹⁾ ‘하나님의 백성’과 ‘천민사상’ 모두 왕의 노비에 대한 통치권은 인정하지만 노비의 소유권은 노비 주인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5. 결론

구약에 나타나는 이원적인 노비관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이원적인 노비관을 분석하여 구약의 노비관을 새로운 각도로 조명하였다.

조선 초기에 나타난 천민사상(天民思想)은 노비도 양민과 마찬가지로 하늘이 낸 백성임을 밝힌 것으로 신분제의 바탕을 이루는 귀천지분론(貴賤之分論)과 과 더불어 이원적인 노비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서로 상충되는 이러한 노비관이 나타난 이유는 조선 초기 건국세력들이 국가를 재정비하는데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천민사상을 강조함으로써 노비소유주인 사대부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었고 왕이 노비를 동원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왕권을 강화시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려 하

48) 정중호, “시드기야 왕의 노비 해방과 왕권강화,” 『구약논단』 제18권 2호 (2012), 188-195.

49) 『世宗實錄』 권95, 세종 24년 2월 기해, 고려 태조 왕건이 노비를 면천시킬 때도 소유주에게 배상하였다. 『高麗史』 1世家 태조 원년 8월辛亥詔.

였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사노비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노비를 금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방면하도록 하였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러한 노비 해방을 실시할 때 토지개혁인 과전제(科田制)를 겸해서 실시하여 노비들이 해방과 더불어 토지를 확보하여 근본적인 생활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구약에서도 당시 관습적으로 시행된 노비제도를 용인하고 있었지만 창조신학을 통해 인간의 평등함을 강조하였고 출애굽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노비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스라엘 노비는 조선의 사노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채무노비였으며 6년 동안 노비로 복역한 후 해방시키도록 하였다(계약법전, 신명기법전). 그리고 성결법전에는 희년제도를 통해 노비를 해방시키는데 토지회복을 통해 근본적인 생활대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노비해방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노비해방법을 분석하여 재해석한 결과 종신노비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이유는 해방된 노비의 생활대책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노비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문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구약의 노비해방법도 이러한 면을 주목하여 강조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조선에서는 천민사상을 바탕으로 노비를 보호하였고 복지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가의례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약에서도, 구약의 노비법이 주변 나라보다 노비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양민과 별 차이없이 노비를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을 계약법전 해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노비와 외국인 노비를 불문하고 노비에게 복지의 혜택을 주기도 하였고 제의에 참여시키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에서 왕권강화와 국력신장을 위해 천민사상을 강조하였듯이 구약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상이 포함된 노비해방법은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6. 참고문헌

「高麗史」

「孟子」

「三國史記」

「成宗實錄」

「世宗實錄」

「詩經」

「樂記」

「正祖實錄」

「朝鮮經國典」

「周易」

「太祖實錄」

「太宗實錄」

「漢書」

금장대, “유교의 천(天)·상제관(上帝觀),” 「사목」 제151호 (1991), 59-86.

박진훈, “조선초기 사노비 정한법(정한법) 논의와 그 성격,” 「역사와현실」 62 (2006), 309-343.

이경식, 「한국중세토지제도사-조선전기」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이인철, “한국 고대사회에서 노비와 노비노동의 역할,” 「한국고대사연구」 29 (2003.3), 151-189.

전형택, “조선후기 사노비의 추쇄,” 「전남사학」 6집 (1992), 35-70.

정윤재, “세종대왕의 ‘천민/대천이물’론과 ‘보살핌’의 정치,” 「동양정치사상사」 제8권 1호 (2009), 145-161.

정중호, “구약의 노비해방법과 조선 후기 노비 현상,” 「구약논단」 제18권 1호 (2012), 154-177.

_____, “시드기야 왕의 노비 해방과 왕권강화,” 『구약논단』 제18권 2호 (2012), 178-201.

지승중, 「조선전기노비신분연구」 (일조각, 1995).

_____, “朝鮮前期의 投托과 壓良爲賤,” 『사회와 역사』 제8권 (1987.12), 11-39.

최이돈, “조선초기 천인천민론의 전개,” 『朝鮮時代史學報』 57 (2011), 5-33.

Childs, B. S., *The Book of Exodus*.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74).

Chirichigno, G. C., *Debt-slavery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3).

Coote, R., 우택주 역, 「아모스서의 형성과 신학」 (대한기독교서회, 2004).

Daube, D. “Direct and Indirect Causation in Biblical Law,” *VT* 11(1961), 246-269.

Davis, G. H., *Exodus*, TBC, (London: SCM Press, 1967).

Fensham, F. C., “Widow, Orphan and the Poor in Ancient Near Eastern Legal and Wisdom Literature,” *JNES* 21(1962), 129-139.

Glass, Zipporah G., “Land, slave labor and Law: Engaging ancient Israel’s economy,” *JSOT* 91 (2000), 27-39.

Klein, R., “A Liberated Lifestyle: Slaves and Servants in Biblical Perspective,”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9. no.4(1982.8), 212-221.

McConville, J. G., *Deuteronomy* (Leicester: Apollos, 2002).

Mendenhall, G. E., *The Tenth Generation: The Origins of the Biblical Tradition* (Baltimore: Th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1973).

Milgrom, J., *Leviticus 23-27* (New York: Doubleday, 2001).

Patrick, D., *Old Testament Law* (London: SCM Press, 1985).

Saeki, P. Y., *The Nestorian Documents and Relics in China* (Tokyo: The Murosen Co., 1951).

Winkler, Dietmar W., W. Li Tang Eds., *Hidden Treasures and Intercultural Encounters: Studies on East Syriac Christianity in China and Central Asia*, (Wien: Lit, 2009).

검색어

천민사상(天民思想)

노비

노비해방법

채무노비

왕권강화

Slavery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Heaven- People Thought(天民思想) in the Early Joseon Period

Joong Ho Chong, Ph.D.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Studies

Kei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ed light on the dualistic view of slavery in the Old Testament from a new perspective through analysis of the dualistic view of slavery in the early Joseon period.

The Heaven-People Thought(天民思想) of the early Joseon period maintained that slaves are people of heaven, just as civilians. Along with the Social Distinction Theory(貴賤之分論), it formed the dualistic view of slavery which provided the basis for the class system. Such conflicting views of slavery appeared because the founding elite in the early Joseon period needed slav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tate. The new king tried to strengthen royal authority and increase national power by creating a basis for mobilizing and governing slaves. And, based on this line of thought, he

www.kci.go.kr

prohibited the system of indebted slaves that accounted for most private slaves, and allowed them to be released after a certain period.

Though accepting of the system of slavery, which had been executed conventionally at that time, the Old Testament emphasized human equity in terms of creation theology. In discussion of the Exodus it made the point that the Israelites should not be taken as slaves since they were people of God.

Also,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Manumission Laws, we find that the reason for allowing life-long slaves was related to measures protecting the livelihood of emancipated slaves. Furthermore, the Joseon dynasty protected slaves according to Heaven-People Thought, and allowed them to receive welfare benefits and to participate in national rituals. We can also confirm through interpretation of the Covenant Code that its slavery law paid more attention to the protection of the slaves in Israel than in other countries, and tried to protect them just as it protected the civilians. Just as Joseon emphasized the Heaven-People Thought in order to strengthen royal authority and enhance national power, the philosophy that treated slaves as the people of God may have contributed to the strengthening of royal authority in the Old Testament.

Key words

Heaven-People Thought(天民思想)

Slave

Manumission Law

Debt slavery,

Strengthening the throne

- 투고일: 2013년 4월 01일
- 심사일: 2013년 5월 06일
- 게재 확정일: 2013년 5월 15일

www.kci.go.kr